

# 축사 표준설계도 이용요령

본고는 지난 1993.12. 6일 농림수산부가 건설부와 협의하여 개정한 '89축사 표준설계도를 신고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이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여 해설부분을 요약·개재한 것이다.

—편집자주—

## 1. 가변형 축사 표준설계도의 개요 및 종류

### 가. 설계변경 개요

국내 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구의 감소에 따른 축산노동력 절감을 목적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와 과학화를 위하여 개발하고 건설부의 인정절차를 거쳐 1989년도에 보급된(건설부공고 제157호, 공고일: 1989. 12.

23) 축사표준설계도중 한우번식우사의 6종을 선정하여 양축농가의 다양한 크기의 표준설계도 요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가변형 축사 표준설계도로 설계변경하여 보급하게 되었음.

### 나. 가변형 축사 표준설계도의 종류(표1)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 건축 기타 대통

표1. 1989년 설계보급분(건설부공고 제157호 : 1989.12.23), 양계부문

계 사	축사-89-10,000-가	육 추 사	1. 가변형 축사로 설계변경 2. 파이프구조 추가설계	20종	3,000- 15,000수	축사면적 140.4 -407.16
	축사-89-10,000-나	육 성 사		25종	3,000- 15,000수	축사면적 247.0 -950.0
	축사-89-10,000-다	산란계사		25종	3,000- 15,000수	축사면적 312.48 -1182.96

령명이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건설업”이라 함은 이 법의 적용대상인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은 영업을 말한다.

3.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5.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는 자는 제외한다.

## 2. 건축허가와 신고

### 가. 축사의 건축허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축사의 규모와 절차에 관한 적용조항은 다음과 같다.

\* 건축 면적이 200㎡ 이상이고, 표준설계 도서를 사용하지 않을 때

#### 건축법 제 8 조(건축허가)

①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 있어서의 건축물과 기타 구역안에 있어서의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증축의 경우에는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 9 조(건축허가등의 신청)

① 법 제 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이하 “건축허가 등”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의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이 법 제 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규칙 제 6 조(건축허가 신청 등)

① 영 제 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법 제 1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3 호 서식의 건축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2. 별표 2의 1란의 도서(도시계획구역외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0㎡ 미만으로서 층수가 2층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 2의 1란의 도서중 배치도 및 평면도에 한한다)
3. 별표 2의 2란 내지 4란의 도서

#### 건축법 시행규칙 제 8 조(건축허가서 등)

① 법 제 8 조 및 법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서는 각각 별지 제 3 호 서식, 별지 제 4 호 서식 및 별지 제 5 호 서식에 의한다.

② 시장 등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 6 호 서식의 건축허가 대장을 건축물의 용도별 및 월별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규칙 제 14 조(착공신고 등)

① 법 제 1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는 별지 제 15 호 서식에 의하며, 이 경우 지하 2 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의 착공신고시에는 흙 막이판 구조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법 제 8 조 제 8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착수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16 호 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축사의 건축신고

**\* 건축면적 200㎡이하이거나 축사표준설계도서를 사용하여 축사를 건축할 때 절차규정**

#### 건축법 제 9 조(건축신고)

① 제 8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 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3.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에 있어

서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를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용도변경

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구안에 건축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이 100㎡이하인 것

5. 기타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 11 조(건축신고)

① 법 제 9 조 제 1 항 제 2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읍·면지역(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주택과 연면적의 합계가 200㎡미만인 축사, 창고 및 작물재배사를 말한다.

② 법 제 9 조 제 1 항 제 5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85㎡이하인 단독주택
2.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건축사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축사

③ 제 9 조 제 1 항의 규정은 법 9 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축사표준설계도서를 이용 건축할 때 신고 규정**

#### 건축법 시행규칙 제 6 조(건축허가 신청 등)

② “요약”건축법 시행규칙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사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

축물에 있어서는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및 별표 2의 3란에 해당하는 도서만을 제출함.

###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건축신고 등)

②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2중 1란의 배치도 및 평면도(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배치도에 한한다)

**\* 축사표준설계도서를 이용 건축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도서**

- 1)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 2) 배치도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건축허가, 신고 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2.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변경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각각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는

규모안에서 변경은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 3. 조경

### 건축법 제32조(대지안의 조경)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대지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읍·면의 자연녹지지역안에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읍, 면의 자연녹지지역에서 조경면제)

## 4. 시공제한 면제

**\* 축사의 경우 시 또는 읍외의 지역에 건축 시 건설업법에 의한 도급면제**

### 건설업법 제4조(특수구조물등의 시공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다.

1. 삭도의 제작과 설치에 관한 공사
2.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건설업법 시행령 제 6조(법 제 4 조의 시공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 4 조 제 2 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서울특별시, 직할시를 포함한다) 또는 읍외의 지역에서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저장고, 작업장, 퇴비사, 축사, 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 5. 설계 감리 등

허가 건축물과 신고 건축물의 건축시 설계 감리에 관한 규정임.

### 건축법 제 19조(건축물의 설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공법을 사용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시 건축주 설계 면제**

### 건축법 제 21조(건축물의 공사 감리)

① 건축주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중 대통령

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정하여야 한다.

### 건축법시행령 제 19조(공사감리)

① 법 제 2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감리를 정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법 제 8 조 제 1 항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한다.

**\* 표준설계에 의한 축사는 신고건물이므로 건축사 감리지정 면제**

### 건축사법 제 4 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①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② 건축법 제 2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를 정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의 경우의 공사감리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1991. 5.31 개정)

③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982. 4. 3 본조개정)

**\* 표준설계도서 이용 건축시 공사감리자 지정면제**

## 6. 건축 지도원

### 건축법 제 28조(건축지도원)

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는 건축

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적법한 유지, 관리를 지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자격 및 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24조(건축지도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 지도와 위법 시공 여부의 확인, 지도 및 단속

2. 건축설비 및 피난시설 등의 법령 등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의 확인, 지도 및 단속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 신고 건축물의 지도

## 7. 신고 및 사용검사시 소방서 동의 대상 제외

#### 소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과 항구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한다). 선거, 산림 그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⑤ “특수장소”라 함은 공연장, 집회장,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의료기관, 학교, 공장 그밖의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는 말한다.

#### 소방법 제8조(건축허가 등의 동의)

①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구조 또는 사용변경의 허가(건축법 제25조 제1항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그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은 그 허가 또는 사용검사를 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건축물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사용검사를 할 수 없다(1992. 12. 8 본항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의 동의대상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법 시행령 제3조(특수장소)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는 별표1과 같다.

#### 소방법 시행령 제4조(건축허가 동의대상물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의 동의대상물의 범위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건축법 제25조 제1항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할 건축물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수 장소로 한다.

1. 연면적 400㎡ 이상인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차용 건축물 또는 차고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2층 이상의 경우에는 2층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것.

3. 비행기 격납고

4.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것

〈별표 1〉 특수장소(제3조 관련)

⑩ 동식물관련 시설

1. 부화장

2. 도축장

\* 축사는 소방법상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시 소방서의 동의 대상건물에서 제외

## 8. 건축물의 사용검사

### 건축법 제18조(건축물의 사용검사)

① 건축주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사감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필증의 교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기에 사용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건축주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준공검사

2. 전기통신공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 구내 통신선로 설비공사의 준공검사

(자세한 내용은 축협중앙회나 각 시·군 축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양계

## 독일직립식 케이지

20년의 제작노하우+구동독의 낮은임금



### 쌀텍 케이지 한국상륙

- \* 자금에서 건축, 수입, 설치까지 책임집니다.
- \* 저가격 실현, 20년의 설계 노하우 + 구동독의 낮은임금.

한국양계시스템

**쌀텍사업부**

전화 (02) 452-8055  
팩스 (02) 452-2921